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9 선고 2018가단3766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18. 11. 8.

판결 선고2018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,260,516원과 이에 대하여 2006. 4. 26.부터 2008. 8. 13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C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D: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다. 피고 E: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[위 피고는,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,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의 경우에는,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, 후소 법원으로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(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]

판사정일예

별지